

명예퇴직 규정

1999. 1. 28. 제정

2015. 2. 6. 개정

- 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학교법인 이화학당 정관 제46조 및 제85조의 2에 의하여 이화여자대학교 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교직원의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2 조 (대상자) 명예퇴직의 대상자는 본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교직원(의료원 소속 직원을 제외한다)으로 한다. (개정 1999.6.24.)
- 제 2 조의 2 (근속연수) 근속연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교원인사 규정 제43조제3항 및 사무직원인사 규정 제29조제3항을 따른다. (신설 2015.2.6.)
- 제 3 조 (명예퇴직의 제한) ①명예퇴직 신청 마감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직원에게는 명예퇴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.
1. 징계요구중에 있는 자
 2.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에 있는 자
 3. 그 밖에 명예퇴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
- ②총장은 교직원 수급계획, 예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의 허가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.
- 제 4 조 (수당 지급액) 명예퇴직자에게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 (이하 “수당”이라 한다) 지급액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(별표)에 따라 산정한다.
- 제 5 조 (명예퇴직의 실시회수 및 시기) 명예퇴직은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(2월 말일 퇴직), 그 회수와 시기는 본교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 (개정 1999.5.11)
- 제 6 조 (명예퇴직 대상자의 선정방법 및 선정결과 통지) ①총장은 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를 열어 명예퇴직 대상자를 선정한다. (개정 1999.5.11)
- ②명예퇴직 대상자가 결정되면 총장은 지체없이 소속 기관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한다. (개정 1999.5.11)
- 제 7 조 (사직원 제출) 제6조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명예퇴직 대상자에 대하여는 명예퇴직신청서를 사직서로 대신할 수 있다. (개정 2015.2.6.)
- 제 8 조 (수당의 수령권자) 수당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정하는 급여수령권자에게 지급한다.
- 제 9 조 (명예퇴직자에 대한 예우) 명예퇴직한 교직원에 대하여는 정년퇴직자와 동등한 예우를 한다.
- 제 10 조 (시행세칙) 수당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

명예퇴직 규정

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(1999. 1. 28. 제정)

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999. 5. 11. 개정)

이 규정은 1999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999. 6. 24. 개정)

이 규정은 1999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5. 2. 6. 개정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 (개정 1999. 5.11)

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

정년잔여기간	산 정 기 준
1. 5년 이내	퇴직당시(기본급+통합수당+급량비)의 50%×정년 잔여월수
2. 5년초과 10년이내	퇴직당시(기본급+통합수당+급량비)의 50%×{60+(정년 잔여월수-60)/2}

(서 식) (삭제 2015.2.6.)